

2021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2021. 1. 5.(화) / 등록금심의위원회

□ 회의 개요

- 일시: 2021. 1. 4.(월) 13:30~13:55
- 장소: 본관 3층 대회의실
- 참석자: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위원 8명 전원 참석
 - 당연직: 교학처장(위원장), 교학제2부처장(부위원장), 총무과장
 - 위촉직: 학생대표 3명, 학부모 1명, 전문가 1명
- ※ 배석: 예산담당사무관 및 업무담당주무관

□ 회의 안건

-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안(전학년도 대비 동결안)

□ 회의 결과

- 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최종 가결(재적위원 8명 전원 동의)

□ 주요 회의 내용

- (위원장) 재적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(예산담당 사무관)에게 진행요청 함. [개회 시각 13:30]
- (예산담당 사무관) 위원소개와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고 하고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.
- (위원장) 보고 받은 책정안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.
- (학생위원) 1인당 교육비는 총교육비에 학생수로 나뉘어지는데, 총교육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, '교육활동운영지원비'랑 같은 항목인지 물음.
- (예산담당 사무관) 예산과목과 상관없이 국가지원금 및 자체지원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됨.

- (업무 담당주무관) 총교육비는 국가지원금, 자체수입금, 발전기금, 산학협력단의 회계결산 결과 교육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요비용의 합계임.
- (위원장) 전문가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의견을 물음.
- (전문가위원) 기존 계약직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인금인상 및 퇴직충당금 마련 등 비용인상의 압박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등록금 동결결정을 한 부분은 대승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임. 학생입장이었을 때에는 등록금 인상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, 현재는 적절한 등록금을 내고,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. 등록금채정(안)을 검토할 때에 등록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보다는 학교의 재원이 학생들에게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함. 일반회사의 경우 효율임금이론이 있듯이, 학습의 질 또한 경제논리에 따를 수 밖에 없음. 재원투입을 통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교 수준이 높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. 등록금이 동결되는 만큼 학교입장에서는 국고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 될 것임.
- (예산담당 사무관) 덧붙이면, 우리학교 1인당 교육비는 국립대학 중 2위로,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지만, 국고나 다른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다음으로 우리학교가 우리가 최고임.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교육비에 투자·지원하고자 학교당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학생입장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음. 100%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는 예·체능계열의 사이버대학교 등록금도 우리학교의 등록금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'20년도에도 직원 처우개선 등 등록금인상에 대한 압박요인이 있어왔지만, 학부모의 부담을 더하지 않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고, 동결함을 양해바람. 국고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부담을 위해 학교의 사업비 비중이 줄고 있는 현실임.
- (학부모위원)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나,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,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인 것 같음.
- (학생위원)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,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함.

총교육비에 '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'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음.

- **(업무담당 주무관)** 총교육비의 기준금액은 국가지원금, 자체수입금, 발전기금, 산학협력단의 회계결산 결과 교육과 직·간접 관련된 소요비용의 합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됨. 학생위원이 여쭙보신 비용은 자체수입금에 포함된 금액임.
- **(학생위원)** 직·간접 관련된 소요비용 중 어떤 부분이 학생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인지, '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'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수의 연구비는 교수의 연구실적물을 위한 비용이지, 학생들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물음.
- **(예산담당 사무관)** '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'의 정의가 학생지도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학생 교육복지에 포함되고, 총교육비는 우리 학교의 기준이 아닌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의 통계자료임.
- **(학생위원)** 등록금이 책정이 되고, 세부적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비율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싶음.
- **(총무과장)**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모가 정해지면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총 세입으로 보고, 세입예산을 어떻게 세출예산으로 편성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됨.
- **(위원장)** 토론을 마친 후, 위원 모두가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 8명(재적위원 8명) 전원이 동의하여 위원장은 원안 가결을 선포하고 폐회를 선언함.

[폐회 시각 13:55]